

공장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표 5] 공장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

- 공장 또는 사업장 경계에서 측정한 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 (단위: dB(A), 배출허용기준/측정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)

지역	주간 (06~22시)	야간 (22~06시)
주거지역·전용주거지역	55 이하	45 이하
일반주거지역	60 이하	50 이하
상업지역·준주거지역	65 이하	55 이하
준공업지역	70 이하	60 이하
일반공업지역	75 이하	65 이하
전용공업지역	80 이하	70 이하

○ 측정 기준

측정위치: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
측정방법: 「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」에 따름

○ 위반 시 제재 (소음·진동관리법 제57조)

배출허용기준 초과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법인: 3억원 이하)

○ 출처 및 원문 확인

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%EC%86%8C%EC%9D%8C%E3%86%8D%EC%A7%84%EB%8F%99%EA%B4%80%EB%A6%AC%EB%B2%95> — 소음·진동관리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

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%EC%86%8C%EC%9D%8C%E3%86%8D%EC%A7%84%EB%8F%99%EA%B4%80%EB%A6%AC%EB%B2%95%EC%8B%9C%ED%96%89%EA%B7%9C%EC%B9%99> —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(국가법령정보센터)

<https://www.me.go.kr> 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(환경부 홈페이지)

※ 본 자료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개정 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